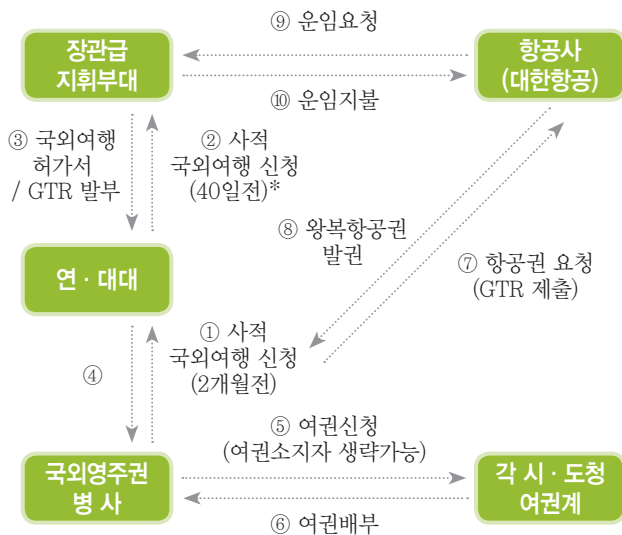


(참고) 현역병 휴가(진역)시 여비지급

- ▶ 정기휴가 여비는 영주권 유지를 위해 해당국으로 출국 시 연 2회까지 지급이 가능하고, 영주권 갱신이 필요 없는 국가나 그 밖의 국가의 거주자는 정기휴가 범위 내에서 지급
- ▶ 영주권 유지를 위해 규정에 의한 정기휴가 횟수보다 자주 해당국을 방문해야 할 경우 본인이 직접 관련 법령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사실을 입증해야 함
- ▶ 여비지급 금액은 정부항공요청서(GTR, 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)의 발급을 원칙(이코노믹 클래스 실비 원칙)으로 하되, 해당 국가의 비자발급을 위해 항공권을 불가피하게 개인 구매하였을 경우 정부항공요청서(GTR)의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 가능



국외여행 절차



* 국외여행허가서 2부, 신원조사결과서 1부(여권소지자 제외), 휴가신청서/계획서 1부



담당안내

구 분	부서명	전화/팩스번호	주 소
병 무 청	자원관리과	042-481-2757 042-481-2979	(35208)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5호
서 울 청	병역지원과	02-820-4333 02-820-4305	(07360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
부 산 청	고객지원과	051-667-5356 051-667-5124	(48208)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01
대 구 경 북 청	고객지원과	053-607-6352 053-607-6270	(41069)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3
경 인 청	병역판정 검사과	031-240-7234 031-240-7370	(16440)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
광 주 전 남 청	현역입영과	062-230-4241 062-230-4360	(61489) 광주광역시 동구 양림로 119번길 8
대 전 충 남 청	병역판정 검사과	042-250-4236 042-250-4133	(34944)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6번길 5
강 원 청	병역판정 검사과	033-240-6234 033-240-6239	(24342)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
충 북 청	병역판정 검사과	043-270-1232 043-270-1300	(28653)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3
전 북 청	병역판정 검사과	063-281-3292 063-281-3290	(55033)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
경 남 청	병역판정 검사과	055-279-9231 055-279-9383	(51439)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13
제 주 청	병역관리과	064-720-3241 064-720-3240	(63219) 제주도 제주시 청사로 59 합동청사 3층
인천병무지청	고객지원과	032-454-2496 032-454-2423	(22205) 인천광역시 남구 노적산로 76
경기북부지청	병역판정 검사과	031-870-0232 031-870-0351	(11642) 경기도 의정부시 전좌로 76
강원영동지청	병역관리과	033-649-4233 033-649-4280	(25590) 강원도 강릉시 울곡 로 2705



병무청



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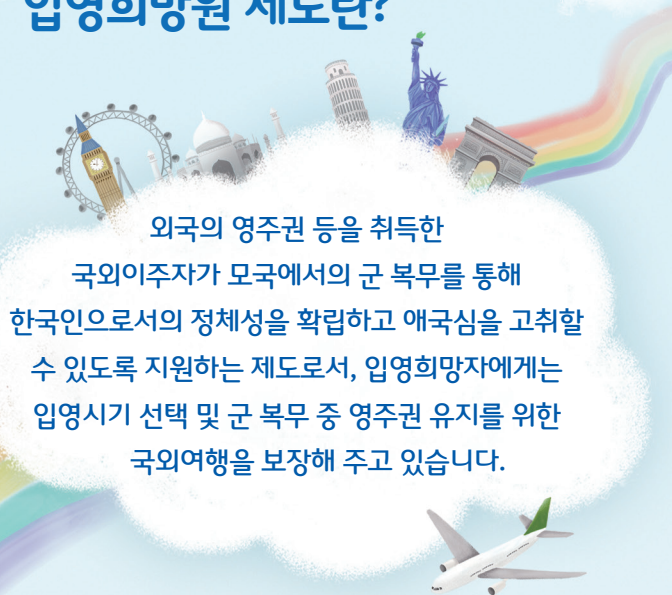
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
www.mma.go.kr

1588-9090



병무청

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란?



외국의 영주권 등을 취득한
국외이주자가 모국에서의 군 복무를 통해
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고취할
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, 입영희망자에게는
입영시기 선택 및 군 복무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한
국외여행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.

출원대상자

- ▶ 외국의 영주권(임시·조건부 영주권 포함)을 얻은 사람
- ▶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(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)을 얻은 사람
- ▶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(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)
- ▶ 「재외국민등록법」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
 - 본인이 복수국적자인 경우
 - ※ 본인이 국외에서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해당
 -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경우
 - 부모와 같이 국외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

접수 및 제출서류

- ▶ 접 수 : 병무청 홈페이지, 지방병무청,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

※ 병무청 홈페이지 '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' 접수

- 병무청 홈페이지 → 병무민원포털 → 「국외여행/체재」 민원 신청 → 「영주권자 입영 희망 민원신청」 → 공인 인증서 로그인 → 입영일자 및 병역판정검사일자 선택

☞ 사회복지요원 대상자는 출퇴근 복무를 거주지역의 복무 기관 소요가 있어야 하므로 입영가능 일자에 대해 관할 지방 병무청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▶ 제출서류 : 영주권 등 체류자격 사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

유의사항

각 국 정부는 영주권자로서 일정기간 출국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주권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으므로, 입영 전에 거주국의 이민당국으로부터 사전 「재입국허가서 (Re-entry Permit)」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입영희망신청의 취소

사정에 의하여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의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취소신청서 제출



병역의무이행

- ▶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
 - 병역판정검사일자 및 장소 선택 가능
 - 입영 희망시기는 신청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입영일자 선택 가능
 - ※ 현역 모집병 지원시 선발가산점 부여(어학병, 카투사 등 일부 제외)
- ▶ 현역입영 후 1주간 “군(軍) 적응 프로그램”을 운영하여 한국문화와 군대예절 등을 교육(육군훈련소, 분기 1회)
- ▶ 부대분류는 인력 운영 수준을 고려하여 전군 무작위 전산분류
- ▶ 본인의 적성, 특기, 자격분야를 고려하여 보직 부여(군 소요 범위 내)
- ▶ 전역 시 「자원병역이행 명예증서」 수여

'18년도 군적응 프로그램 운영일자

- ▶ 입영일자 : 3. 12.(월) / 6. 18.(월) / 9. 10.(월) / 11. 12.(월)
- ▶ 입영부대 : 육군훈련소(분기 1회)
 - ※ 군적응 프로그램 운영 이외의 날에도 원하는 시기 입영 가능

국외여행 보장 및 휴가여비 지급

- ▶ 현역병의 경우 정기휴가 기간 중 국외여행을 보장하며, 이주국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와 국내여비를 국가에서 지급(전역 시 편도 항공료 지급)
- ▶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의 경우 영주권 유지를 위한 국외여행 시 연1회에 한하여 왕복 항공료 지급 가능(소집 해제 시 편도 항공료 미지급)